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19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진선미 · 장철민 · 박지원
용혜인 · 이성윤 · 김한규
김문수 · 서영교 · 백승아
조승래 · 강경숙 · 박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출하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만을 규정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서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

제2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3(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죄명
3. 피의사실
4. 불기소이유
5. 부수처분 및 압수물처분
6.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

② 그 밖에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의 기재 사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장 등 기재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② (생략)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u><신설></u>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u>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u> ④·⑤ (현행과 같음) <u>제259조의3(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 <u>1. 피의자의 성명</u> <u>2. 죄명</u> <u>3. 피의사실</u> <u>4. 불기소이유</u> <u>5. 부수처분 및 압수물처분</u> <u>6.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u> <u>② 그 밖에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의 기재 사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u>

령으로 정한다.